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및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8.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 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마목”으로 한다.

제2조의3 중 “이란 금융기관”을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제13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의6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 중 “2년”을 “8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별지 제9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6 앞쪽 제8항 중 “상속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 부표7 앞쪽 제7항 중 “상속일”을 “상속개시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10호서식 부표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2, 별지 제10호서식 부표3, 별지 제10호서식 부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3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14항 중 “전문가”를 “전문감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전문가 감정기관별”을 “전문감정기관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5호 중 “2인 이상의 전문가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 뒤쪽의 기호(*) 중 “3개월”을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뒤쪽 다목 중 “70”을 “80”으로,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1996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뒤쪽의 기호(※) 중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부터, 경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늦게 취임한 이사부터 그 명세를 적습니다.”을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그 명세를 적습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5 뒤쪽 제1호다목 중 “70”을 “80”으로,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1996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전자우편 주소	
	④ 주소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⑥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상속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⑩ 주소					
	⑪ 상속원인 [] 사망 [] 실종 [] 인정사망 [] 기타				⑫ 상속개시일	
세무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리번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⑰ 상속세과세가액			영리법인 면제	유증등재산가액	
⑱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⑲ 감정평가수수료				⑳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⑳ 과세표준 (⑰ - ⑱ - ⑲)			㉑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㉒ + ㉓ - ㉔ - ㉕ + ㉖)		
			㉗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㉘ 세율			㉙ 신고불성실가산세		
			㉚ 납부지연가산세		
㉛ 산출세액			㉜ 납부할 세액(합계액) (㉑ - ㉗ + ㉙ + ㉚)		
㉝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㉞ 산출세액 (㉛ + ㉝)			㉟ 연부연납		
㊱ 이자상당액			㊲ 물납		
㊳ 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현금	㊴ 분납	
㊵ 계 (㉞ + ㉟ + ㊲ + ㊳ + ㊴)				㊵ 신고납부	
㊶ 증여세액공제	소계 (㉛ + 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㊹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㊺ 단기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㊻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세무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㊼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⑧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⑨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 "⑪ 상속원인"란: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 "⑫ 상속개시일"란: "⑪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 "⑬ 성명"부터 "⑯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 "⑰ 상속세과세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㉔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⑱ 상속공제액"란: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㉕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㉑ 세율", "㉒ 산출세액"란: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㉓ 세대생략가산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㉕ 이자상당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9항 및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㉗ 증여세액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㉙ 면제분 납부세액"란: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 "유증 등 재산가액"란: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 "면제세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 "㉛ 기업상속 납부유예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기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 "㉝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㉞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물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문화재 등 물납(철회)신청서(별지 제14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① 재산구분 코드	② 재산종류 코드	③ 소재지 · 법인명 등		④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분)	⑤ 수량 (면적)	⑥ 단가	⑦ 평가가액	⑧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⑨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액	⑩ 상속 재산 가액	
	⑪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⑫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⑬ 계	
	⑭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⑮ 공공단체유증재산가액	
	⑯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⑰ 계	
	⑱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㉑ 공익신탁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㉒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㉓ 계	
	㉔ 공과금	
	㉕ 장래비용	
	㉖ 채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㉗ 계 (㉔ + ㉕ 또는 ㉔ + ㉖)	
	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㉚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㉛ 상속세과세가액 [㉔ - (㉘ + ㉙ + ㉚) + ㉗]		

작성방법

1. "①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②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 I (순수토지)	토지 II [일반건물(07) 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14유형 제외)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 재산종류코드 14(서화·골동품 등)는 서화·전적·도자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함

3. "③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주)○○건설)을 적습니다.
4. "④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②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보유면적/총면적)을 각각 적습니다.
5.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 평가기준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
|------|------------------------------------|------------------------------------|--------------------------------------|--------------------------------------|-------------------------------------|--------------------------------|-------------------------------------|---|
| 코드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6. "⑩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㉖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⑪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공과금"란부터 "㉔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에는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① 피상속인과의 관 계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법 정 상 속 지 분 율	⑥ 법 정 상 속 재 산 가 액	⑦ 실 제 상 속 지 분 율	⑧ 실 제 상 속 재 산 가 액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⑨ 재산구분 코 드	⑩ 재산종류 코 드	⑪ 소 재 지 · 법인명 등		⑫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분)	⑬ 수 량 (면 적)	⑭ 단 가	⑮ 평가액	⑯ 평 가 기 준 코 드
		국 외 자 산 여 부	국외재산 국 가 명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계	⑰ 상 속 재 산 가 액			
	⑱ 상 속 개 시 전 처 분 재 산 등 산 입 액			
	비 과 세 재 산 가 액	⑲ 금 양 임 야 등 가 액		
		⑳ 공 공 단 체 유 증 재 산 가 액		
		㉑ 기 타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액	㉒ 공 익 법 인 출 연 재 산 가 액		
		㉓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㉔ 기 타		
	가 산 하 는 증 여 재 산 가 액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㉖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㉘ 합 계				

작성방법

- "①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 "⑤ 법정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을 적습니다.
- "⑥ 법정상속재산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⑩ 총상속재산가액 합계액" 및 "㉕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같은 서식의 "⑬ 비과세 재산가액 계", "㉒ 공과금" 및 "㉔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앞쪽의 "⑤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⑦ 실제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적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⑨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⑩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 I (순수토지)	토지 II [일반건물(07) 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14유형 제외)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 재산종류코드 14(서화·골동품 등)는 서화·전적·도자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함

- "⑪ 소재지·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주식○○건설)을 적습니다.
- "⑫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⑩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예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적음)을 각각 적습니다.
- "⑬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거 주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④ 주 소				⑤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 여 일 자	
	⑪ 주 소				⑫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전화)
세 무 대 리 인	⑬ 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리 번 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⑦ 증 여 재 산 가 액			③⑨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①⑧ 비 과 세 재 산 가 액			세액 공제	④① 세 액 공 제 합 계 (④① + ④② + ④③ + ④④)	
과세가액 불산입	①⑨ 공 익 법 인 출 연 재 산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④① 기 납 부 세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②①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④②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②① 장 애 인 신 탁 재 산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④③ 신 고 세 액 공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②② 채 무 액			④④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②③ 증 여 재 산 가 산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④⑤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		
②④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①⑦ - ①⑧ - ①⑨ - ②① - ②② + ②③)			④⑥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증여재산공제	②⑤ 배 우 자		④⑦ 납 부 지 연 가 산 세		
	②⑥ 직 계 존 속		④⑧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②⑦ 직 계 비 속		④⑨ 자 진 납 부 할 세 액 (합 계 액) (③⑦ + ③⑧ - ③⑨ - ④① - ④⑤ + ④⑥ + ④⑦ + ④⑧)		
	②⑧ 그 밖의 친족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②⑨ 혼 인		⑤① 연 부 연 납		
	③① 출 산		⑤② 분 납		
③① 재 해 손 실 공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⑤① 분 납	
③② 감 정 평 가 수 수 료				⑤② 신고납부	
③③ 과 세 표 준 (②④ - ②⑤ - ②⑥ - ②⑦ - ②⑧ - ②⑨ - ③① - ③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③④ 세 율			년 월 일		
③⑤ 산 출 세 액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③⑥ 세 대 생 략 가 산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③⑦ 산 출 세 액 계 (③⑤ + ③⑥)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③⑧ 이 자 상 당 액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공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⑨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③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⑬ 성명"부터 "⑯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 "⑰ 증여재산가액"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의 "⑨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㉔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⑰ 증여재산가액"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㉔ 합계액"]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⑬ 증여재산가액"
- "㉔ 채무액"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㉔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㉔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㉔ 배우자"란부터 "㉔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 계 존 속 :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 계 비 속 :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 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㉔ 혼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⑯ 금액을, "㉔ 출산"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⑰ 금액을 적습니다.
- "㉔ 세율", "㉔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4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억원 이하	10%	-
	60억원 초과 290억원 이하	20%	60,000만원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95억원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9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90억원

- "㉔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㉔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을 적습니다.
- "㉔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㉔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 "㉔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㉔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㉔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재산구분 코 드	② 재산종류 코 드	국 외 자 산 여 부	국 외 재 산 국 가 명	③ 소 재 지 · 법인명 등	④ 사업자등록 번호 (지 분 율)	⑤ 수 량 (면 적)	⑥ 단가	⑦ 평가 가액	⑧ 평 가 기 준 코 드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계	⑨ 증 여 재 산 가 액								
	⑩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⑪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⑫ 공익신탁 재산가액							
		⑬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⑭ 증 여 재 산 가 산 액								
	⑮ 합 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B14	B21	B22	B23

2. "②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 I (순수토지)	토지 II [일반건물(07) 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 유형, 13~14 유형 제외)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 재산종류코드 14(서화·골동품 등)는 서화·전적·도자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함

3. "③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주)○○건설)을 적습니다.

4. "④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②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적습니다.

5.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강제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기존자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관리번호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②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가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라 과 다 보 유 현 금	
		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 (② - ③)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 ②)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	⑥ 가업자산상당액 (① × ⑤)		
	⑦ 총 증여재산가액		
	⑧ 증여세 납부세액		
	⑨ 세액 (⑧ × ⑥ ÷ ⑦)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서 1부 2.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㉑~㉕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 "⑥ 가업자산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

1. 혼인 증여재산						
① 혼인신고(예정)일						④ 합계
② 증여일자						
③ 증여재산가액						
2. 출산 증여재산						
⑤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⑧ 합계
⑥ 증여일자						
⑦ 증여재산가액						
3.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명세						
구분		혼인		출산		
기준에 공제받은 금액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⑨		⑩		
	10년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	⑪		⑫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1억원 - (⑨ + ⑩ + ⑪ + ⑫)]		⑬				
공제받을 금액		⑭		⑮		
증여재산공제액(⑬ = ⑨ + ⑭, ⑰ = ⑩ + ⑮)		⑯		⑰		
첨부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2. 혼인예정인 경우에는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1. "③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2. "⑦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공제받을 금액(⑭ 또는 ⑮)"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⑬)"을 한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수 증 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④ 주소	⑤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증 여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여일자	
	⑪ 주소	⑫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1. 증여재산

⑬ 재산구분코드	⑭ 재산종류코드	⑮ 소재지·법인명 등		⑯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⑰ 수량 (면적)	⑱ 단가	⑲ 금액
		국외재산여부	국외재산가명				
		[]여 []부					
		[]여 []부					
		[]여 []부					
계							

⑳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

2.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결정한 증여세액

㉑ 증여세액	
--------	--

3. 이자상당액

㉒ 일수	
㉓ 이자율	
㉔ 이자상당액 (㉑ × ㉒ × ㉓)	

4. 납부할 세액

㉕ 납부할 세액 (㉑ + ㉔)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내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정 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⑨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③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⑬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 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B14	B21	B22	B23

- "⑭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 구분	현금	토지 (순수토지)	토지 [일반건물(07) 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 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 13, 14유형 제외)	가상 자산	서화 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 재산종류코드 14(서화·골동품 등)는 서화·전적·도자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함

- "⑮ 소재지·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를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 "⑯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⑭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적습니다.
- "㉑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유형	관련 조문	코드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01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	02

- "㉒ 증여세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으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적습니다.
- "㉓ 일수"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 "㉔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 증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거 주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④ 주 소				⑤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증 여 자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 여 일 자	
	⑪ 주 소				⑫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전화)
	⑬ 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리 번 호	
세 무 대 리 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 법」 제30조의5)	⑰ 해당 증여재산 (부표 1 ⑰가액)		⑳ 신고 불 성 실 가 산 세		
	기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 법」 제30조의6)	⑱ 가산 증여재산 (부표 1 ⑱가액)		㉑ 납 부 지 연 가 산 세		
		㉒ 해당 증여재산 (부표 2 ㉒가액)		㉓ 자 진 납 부 할 세 액 (㉓ - ㉔ + ㉕ + ㉖)		
		㉗ 가산 증여재산 (부표 2 ㉗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㉘ 합 계[(⑰ + ⑱) 또는 (㉒ + ㉗)]			㉙ 연 부 연 납		
㉚ 증 여 재 산 공 제			현 금	㉛ 분 납		
㉜ 재 해 손 실 공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㉜ 신고납부		
㉝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㉞ 과세표준 (㉚ - ㉛ - ㉜ - ㉝)						
㉟ 세 율 (1 0 % , 2 0 %)			년 월 일			
㊱ 산 출 세 액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액 공제	㊲ 세액공제 합계(㉞ + ㉟)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㊳ 납 부 세 액 공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㊴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4. 기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㉒ 주민등록번호" 및 "㉑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㉓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㉗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㉔ 성명"부터 "㉖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또는 제30조의7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㉗"부터 "㉙"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㉚ 증여재산공제"란:
 - 창업자금 과세특례: 5억원을 적용하되, ㉚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㉚의 금액을 적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0억원을 적용하되, ㉚의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㉚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㉚란의 금액이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㉚란의 금액이 300억원(부모의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㉛ 세율"란
 - 창업자금 과세특례: 10%를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0%를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11. "㉝ 분납"란: 납부할 금액(㉚ - 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 "㉞ 신고납부"란: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 재산구분 코 드	② 재 산 종 류 코 드	③ 소 재 지 · 법인명 등		④ 사업자등록 번호 (지 분)	⑤ 수 량 (면 적)	⑥ 단가	⑦ 평가가액	⑧ 평 가 기 준 코 드
		국 외 자 산 여 부	국 외 재 산 국 가 명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과 세 특 레 적 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⑨ 해 당 증 여 재 산 가 액	
	⑩ 해 당 채 무 액	
	⑪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⑫ 계 (⑨ - ⑩ + ⑪)	
과 세 특 레 적 용 한 도 금 액 계 산	⑬ 총 한도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⑭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⑪)	
	⑮ 계 (⑬ - ⑭)	
과 세 특 레 적 용 대 상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⑯ ⑫과 ⑮ 중 적 은 금 액 (다만, ⑫ < ⑬이면, ⑫ - ⑮의 금액)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⑫ > ⑬ 해당 시에만 적용)	⑰ 증 여 재 산 가 액 (⑨ - ⑯)	
	⑱ 채 무 액 (= ⑩)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

작성방법

1. "①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창업자금)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코드	A12	A13	A22	A23

2. "②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 I (순수토지)	토지 II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유형, 13~14유형 제외)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 재산종류코드 14(서화·골동품 등)는 서화·전적·도자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함

3. "③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④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②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6조)	기존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6. "⑩ 해당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⑪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8.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⑪ 증여재산가액"과 "⑬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의 "⑪ 증여재산가액" 또는 "⑬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고용)

관리번호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④ 주소	⑤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⑥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여일자
세무대리인	⑪ 주소	⑫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리번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최초 신고

[] 정산 신고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⑰ 초과배당금액			세액공제	③① 세액공제합계 (③② + ③③ + ③④)	
⑱ 소득세상당액 (실제소득세액)				③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⑲ 증여재산가액 (정산증여재산가액 - ⑰)				③③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⑳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③④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㉑ 증여세과세가액 (⑲ + ㉒)			㉓ 증여재산가액 기준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2항)		
증여재산공제	㉒ 배우자		㉔ 신고불성실가산세		
	㉓ 직계존속		㉕ 납부지연가산세		
	㉔ 직계비속		㉖ 자진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③⑤ - ③① - ③⑥ + ③⑦ + ③⑧)		
	㉕ 그 밖의 친족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㉖ 과세표준 (㉑ - ㉒ - ㉓ - ㉔ - ㉕)			㉗ 연부연납		
㉘ 세액			현금	㉙ 분납	
㉚ 산출세액				㉛ 신고납부	
㉜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㉝ 산출세액계 (㉚ + 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초과배당에 대한 입증서류 2. 정산신고 시 실제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⑨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③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⑬ 성명"부터 "⑯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 [] 최초신고, [] 정산신고: 최초신고와 정산신고 중 ☒ 표시합니다.
(1) 최초신고: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2) 정산신고: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 "⑰ 초과배당금액"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⑱ 소득세 상당액(실제소득세액)"란
(1) 최초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소득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초과배당금액	세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06만원+(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2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2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24)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24)

- 정산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실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㉒ 배우자"란부터 "㉔ 그 밖의 친족"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 계 존 속	: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 계 비 속	: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 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㉗ 세율", "㉘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㉙ 증여재산가액 기준 증여세액"란: 정산신고 시에만 작성하는 항목으로서 최초 신고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㉘ 산출세액 계"에서 "㉛ 세액공제 합계"를 차감한 금액)를 적습니다.
- "㉚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㉜ 납부지연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 "㉝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㉞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㉟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정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고용)

관리번호 -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④ 주소				⑤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⑦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여일자
	⑪ 주소				⑫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특정법인	⑬ 법인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사업연도 종료월
세무대리인	⑯ 성명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관리번호
	⑲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분		금액	구분		금액	
㉔ 증여재산가액			세액공제	㉒ 세액공제합계 (㉓ + ㉔ + ㉕ + ㉖)		
㉑ 비과세재산가액				㉓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㉔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㉔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㉕ 공익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㉕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㉖ 장애인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㉖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㉗ 채무액			㉗ 신고불성실가산세			
㉘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㉘ 납부지연가산세			
㉙ 증여세과세가액 (㉑ - ㉒ - ㉓ - ㉔ - ㉕ + ㉖)			㉙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㉚ 배우자		50	자진납부할 세액 (합계액) (㉓ + ㉔ - ㉕ - ㉖ + ㉗ + ㉘)		
	㉛ 직계존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㉜ 직계비속		51	연부연납		
	㉝ 그 밖의 친족					
㉞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52 분납		
㉟ 감정평가수수료				53 신고납부		
㊱ 과세표준(㉙ - ㉚ - ㉛ - ㉜ - ㉝ - ㉞ - ㉟)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㊲ 세율						
㊳ 산출세액(㊲ ≤ ㊴)						
㊴ 산출세액 한도						
㊵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㊶ 산출세액계(㊳ + ㊵)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㊷ 이자상당액						
㊸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특정법인과외의 거래 관련 서류 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산출세액 한도 계산시 반영한 법인세 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⑨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③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 "⑩ 증여일자"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을 적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⑬ 법인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특정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⑮ 사업연도 종료월"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 "⑯ 성명"부터 "⑰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 "⑳ 증여재산가액"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 "㉘ 배우자"란부터 "㉙ 그 밖의 친족"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 계 존 속 :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 계 비 속 :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 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㉚ 세율", "㉛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도: ㉛ 산출세액 한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㉜ 산출세액 한도":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세 상당액: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과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

$$\text{법인세 상당액} = \left(\text{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text{법인세 공제·감면액} \right) \times \left(\frac{\text{해당 거래이익}}{\text{각사업연도소득금액}} \right) \times \text{해당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㉝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㉞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㉟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 "㊱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㊲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㊳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세 목	④ 상속 또는 증여		가업상속(증여) 해당 여부	
피상속인(증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⑦ 신고(고지납부)기한	⑧ 총 납부세액			⑨ 최초 납부세액			⑩ 연부연납 대상금액(⑧-⑨)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최초,[]변경,[]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⑨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 상속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 증여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사용계획								⑨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사용금액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 용도	기간		⑧금액		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 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분류 코드	과목명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적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80%** 이상을 사용하고,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않고,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예) 현금 10억 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해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㉔~~~~㉕~~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해야 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⑧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해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문서번호

법인세과

기 본 사 항			과 세 내 용		
① 법 인 명 (공익사업명)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 명	④ 세목 및 세액	⑤ 과 세 사 유	⑥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주무관청장 귀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이사 수	명					⑯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고용직원 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⑮총자산가액	⑮부채	⑮순자산			
			⑮소계	⑮기본순자산	⑮보통순자산	⑮순자산조정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 수익	㉮기타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6.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복식부기 여부	[]여 []부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여부	[]여 []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	[]여 []부
㉮외부 회계감사인		㉮외부 회계감사 의견	

7. 재공시 사유

㉮ 재공시 사유

8.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했으며, 해당 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첨부서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에 따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에 따른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공익법인등의 재무제표 7. 감사보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합니다)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 표를 합니다.
- 나. "㉑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 (예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 다. "㉒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라. "㉓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 마. "㉔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 표를 합니다.
-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 표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바. "㉕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사. "㉖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 표를 합니다.
-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인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 아. "㉗이사 수"란은 사업연도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 수를 적습니다).
- 자. "㉘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 차. "㉙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㉚총자산가액-㉜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지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㉚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㉜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작성방법

3. 자산현황

- 가. "㉔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 나. "㉔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㉔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에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란에서 제외합니다).
- 다. "㉔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㉔부터 ㉔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㉔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등의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 예) 00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 나. "㉔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다. "㉔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㉔기부금"란에 적습니다.
- 다. "㉔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 라. "㉔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요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마. "㉔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㉔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나. "㉔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모든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다. "㉔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제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 가. "㉔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여"에 √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에 √ 표를 합니다.
- 나. "㉔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적고,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 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다. "㉔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 표를 합니다.
- 라. "㉔외부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 표를 합니다)
- 마. "㉔외부 회계감사인"란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등의 상호(성명)를 적고, "㉔외부 회계감사 의견"란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적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적습니다.

7. 재공시 사유

법정공시 기한 이후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시 하는 경우 재공시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기부금품 지출명세 수정, 감사보고서 첨부, 이사 및 출연자 명세 수정, 운용소득 과소신고 및 불일치 수정, 기부금 이월액 수정 등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문화예술(코드1100) []스포츠(코드1200)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고등교육(코드2200) []기타교육(코드2300) []학술연구(코드2400)
[]장학(코드2500) []영유아보육(코드2600)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요양원(코드3200)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사회복지(코드4100)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환경(코드5100) []동물(코드5200)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주거(코드6200) []고용 및 훈련(코드6300)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정치단체(코드7300)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봉사증진(코드8200) []모금활동(코드8300)
[]국제활동(코드9100)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비즈니스연합(코드11100) []전문가연합(코드11200) []노동조합(코드11300)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모두 해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 · 여성, []일반대중,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제주,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전세계,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 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당기	전기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 총 합계 (1+2+3)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⑩ 사업 외 손익	⑪)고유 목적사 업준비 금환입 (전입)
		사업손익									
		금 융				부 동 산			⑨ 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을 포함합니다)의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기업이 출연한 재단, 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은 제외합니다)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예: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 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무형자산 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마. "2. 사업외비용"란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적는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금액을 합계에 적습니다.

바.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 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 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라.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마. "⑪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전입)"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에 적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⑯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	⑮ 자산소계	⑮ 토지	⑮ 건물	⑮ 주식 및 출자지분	⑮ 금융자산	⑮ 기타자산	⑮ 부채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 총계	㉮ 사업수익					㉮ 사업외수익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 소계	㉮ 기부금	㉮ 보조금	㉮ 회비 수익	㉮ 기타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 총계	㉮ 사업비용					㉮ 사업외 비용 등 기타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 소계	㉮ 사업 수행비용	㉮ 일반 관리비용	㉮ 모금 비용	㉮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제공시 사유

㉮ 제공시 사유

6.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 표를 합니다.
- 나. "⑨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 다. "⑩기부금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라.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 표를 합니다.
-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 표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종교, 7.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과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의 수를 적습니다.

- 자. "⑯자원봉사 연인원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 차. "⑰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 가. "⑱자산소계~㉔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

(예)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에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에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에 구분합니다.

작성방법

- 나. "㉑주식 및 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 다. "㉒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㉑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 라. "㉓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㉑부터 ㉒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㉔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 나. "㉕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 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라. "㉖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㉔기부금"란에 적습니다.
- 마. "㉗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 바. "㉘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사. "㉙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 사업외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㉚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나. "㉛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다. "㉜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5. 제공시 사유

법정공시 기한 이후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하여 제공시 하는 경우 제공시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자산총계 수정, 수익 및 비용현황 수정, 고용직원 수 수정 등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문화예술(코드1100)	[]스포츠(코드1200)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고등교육(코드2200)	[]기타교육(코드2300)	[]학술연구(코드2400)
[]장학(코드2500)	[]영유아보육(코드2600)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요양원(코드3200)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사회복지(코드4100)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환경(코드5100)	[]동물(코드5200)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주거(코드6200)	[]고용 및 훈련(코드6300)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정치단체(코드7300)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봉사증진(코드8200)	[]모금활동(코드8300)	
[]국제활동(코드9100)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비즈니스연합(코드11100)	[]전문가연합(코드11200)	[]노동조합(코드11300)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모두 해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 · 여성, []일반대중,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제주,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전세계,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제1쪽 "4.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인 명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		⑥ 사 업 목 적	
⑦ 사 업 연 도		⑧ 설 립 근 거 법	

1. 자산보유현황

구 분		금 액
⑨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⑩ 토 지	
	⑪ 건 물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 주식·출자지분 등	
	⑭ 기 타	

2. 수익금액 현황

구 분		금 액
⑮총 수 익 금 액		
수 익 원천별	⑯ 금 융	
	⑰ 부동산	
	⑱ 기타 수익사업	
	⑲ 사업외손익	
	⑳ 고유목적사업준비금	
	㉑ 공익목적사업	

3. 세무확인결과

㉒ 위 반 금 액	㉓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㉔ 구 분	㉕ 성 명	㉖ 사업자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3.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4.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6. 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7.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자산보유현황

- 가. ⑨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 나. ⑩란부터 ⑭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익금액 내역

- ⑮ 총수익금액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 공익목적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총액을 적습니다.
- ⑯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 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⑱ 공익목적사업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익금액을 적습니다.

3. 세무확인결과

- 가. ㉒란은 부표 1의 ⑮ 위반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㉓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 가. ㉔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적습니다.
- 나. ㉕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소속 등의 경우 해당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다. 외부전문가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적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 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 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 호라목----- ----- ----- ---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 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등”이란 금융기관을 통하 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 ----- -----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u>금융기관</u>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u>금융기관</u>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u>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u>----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 ----- ----- ----- -----. 1. ----- ----- ----- ----- ----- <u>금융회사등</u>----- ----- 2. ----- <u>금융회사등</u>----- ----- ----- ----- -----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 ----- ----- -----.
---	---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60만원 +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 +

② (생략)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배당금액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 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1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1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 4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1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10분의 45)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삭제>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제1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
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
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
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이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
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
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
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
인등은 제외한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
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
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
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
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

② ~ ⑤ (생략)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6(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영 제43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삭 제>